

울산지방법원 2021. 7. 22 선고 2018나27287 판결 [부동산매매대금반환청구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1. 6. 24.

판 결 선 고 2021. 7. 22.

제1 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. 11. 23. 선고 2018가단56772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99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. 3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2. 9. 1.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C 임야 991. 74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를 9,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2012. 9. 30.까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.

나.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입구에 커피 박물관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, 위 토지에 전원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입구에 커피 박물관을 건축할 예정이고 위 토지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.

다. D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매매대금 9,9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1. 1. 28.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(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968).

라.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원고 항소이유서가 2019. 1. 23. 피고에게 송달되었다.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살피건대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대표이사 D의 사기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,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9,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일 다음날인 2018. 3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,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(2019. 5. 21.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이 정한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,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안복열, 판사 김현진, 판사 신형철